##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	처리기간	30일	(五一)
신청인	성명			생년월	일		
	주소			(전화:	번호 :		)
신청내용	기관명			사업지	ト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		생년월	<u> </u> 일		
	소재지						
	전화번호						
	설립 근거						
	설립 목적						
	설립 연월일						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환경 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 환경부장관 귀하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<ol> <li>정관 사본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심사원의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인증심사 운영계획서</li> </ol>	
담당공무원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	
확인사항	2. 사업자등록증명	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